

배재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6.4. 1., 개정 2017.1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배재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물론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배재대학교 직제규정에 규정된 배재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본교 구성원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 등”이란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성원”이란 본교에 소속된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당사자”란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의 보호)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

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제1절 조직

제7조(조직) ① 배재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표하고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성희롱·성폭력 기타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교육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센터의 기능 및 직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인권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신설 2017.12.13.>

제8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 상담, 신고접수, 조사 및 처리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접수, 조사 및 처리
3.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연계 등 법률구조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5. 법률교육 및 시민단체 연계활동
6. 기타 학생 및 교직원 인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배재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법학전공 교수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변호사 또는 교원·직원 중 4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관련 정책수립
4.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5. 예산과 결산
6. 규정 제정 및 개폐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성희롱·성폭력·인권심의위원회

제13조(성희롱·성폭력·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사건 및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생상담센터장, 법학전공

교수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변호사 또는 교원·직원 중 4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한 성(性)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추천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성희롱·성폭력·인권심의위원 업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징계요청
- 3. 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 4. 기타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인권심의위원 회의) ①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조사위원회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3.>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하워드대학 부학장, 서재필대학 부학장, 아펜젤러대학 부학장, 김소월대학 부학장, 학생상담센터장, 법학전공 교수 1인, 총무인사팀장, 교무팀장, 인재개발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원·직원 중 6인 이내, 학생대표 2인의 위원을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3.>
- ④ 해당 안건의 특수성에 따라 변호사, 전문상담인등의 관련자를 조사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신속한 조사 및 비밀보호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3.>

제17조(조사위원의 업무) 조사위원장은 조사를 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8조(신고)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을 직접방문, 전화, 서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 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성희롱·성폭력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기타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한다.

⑤ 센터는 이미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 회부)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

제21조(임시조치) 심의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중재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중재결과는 센터장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중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해자,피신고인 (이하 당사자' 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6조(신고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요청 및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제24조제3항 조사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 담당부서의 장에게 피신고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1조 또는 제27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13.>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6.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징계요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지원
2. 관련부서의 장에게 피해자 치유상담, 가해자의 피해자에 주변 접근제한 및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 요청
3.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사과, 봉사명령,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해결 및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신설 2017.12.13.>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구조 및 교육

- 제29조(법률구조)** ① 본교 구성원 및 지역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② 당사자가 경제적인 사정을 인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법률상담 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폭력예방교육) ①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관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②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시민단체 연계)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법률교육 및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배재시민법률상담소 운영규정 (4-1-11)’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